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2025. 9. 11.

발 의 자: 문진석 의원

찬 성 자: 29인

###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법리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수 사본부의 수사는 특검의 지휘없이 수사하도록 함.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강화하고자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7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를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안 제11조제4항 단서 중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로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제10조(수사기간 등)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⑥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⑦ 제6항에 <u>따라</u>	⑦	7
사건을 <u>인계받은</u>	<u>배당받은 국</u>	
<u>관할</u> 지방검찰청	<u>가수사본부의 <b>사법</b></u>	사법경
<u>검사장은</u> 신속하게	경찰관은 특별검사	<u> 찰관은</u>
수사를 완료하여	<u>의 지휘 하에</u>	
공소제기 여부를	<u>완료</u>	
결정하고 공소제기	하고, 범죄의 혐의	
된 사건의 공소유	가 있다고 인정되	
<u>지를 담당한다</u> . 이	는 경우 「형사소	
경우 사건의 처리	송법」의 규정에	
보고에 관하여는	따라 지체 없이 관	
제12조를 준용한다.	할 지방검찰청 검	
	사장에게 사건을	
	<u>송치하여야 한다</u> .	
	<후단 삭제>	
제11조(재판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같음)
<u>&lt;신 설&gt;</u>	<u>④ 제2조제1항 각</u>	<b>4</b>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	

④ 재판장은 특별 검사 또는 피고인 의 신청이 있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 가하여야 한다. 다 만, 중계를 허가하 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 유를 밝혀 선고한 다.

비기일은 제외한다) 은 중계하여야 한 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국가의 안전보장 중대하게 해할 우 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 풍속을 해할 염려 하는 경우에는 재 가 있을 때에는 재 판의 일부를 중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u>⑤</u> 전항의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판의 일부를 중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⑤ (개정안과 같음)

<u>(5)</u>	(생	략)
$\overline{}$	` •	

<신 설>

- ⑥ (현행 제5항과 │ ⑥ (개정안과 같음) 같음)
- ⑦ 제4항 또는 제5 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 인정보·사생활·국가 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 변 또는 사생활 보 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 를 의미한다)를 하 지 아니하여도 되 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u>니면 위 중계와</u> 관련하여 민사상·형 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⑦ (개정안과 같음)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 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60명"을 "70명"으로, "100명"을 "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재판장은"을 "전항의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으로 한다.

-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단서 중 "제10조제7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내란 등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중인 사

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형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
	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u>죄</u>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
	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
	<u>는 범죄</u>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
	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
	<u>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u>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
	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
	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
한 등) ① ~ ④ (생 략)	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	5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수는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 ⑥ ⑦ (생 략)
-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u>군검사의</u> 권한에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 제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u>70명</u>
<u>140명</u>
<u>.</u>
⑥ · ⑦ (현행과 같음)
8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_ 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u>.</u>
세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

-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 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 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 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u>특별수사관</u>) 저 ① (생 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 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
<u>다.</u>
<u>④</u> 제2항 및 제3항
세8조(특별검사보와 <u>특별수사관 등</u> )
① (현행과 같음)
②
<u>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u>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
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 ③ ~ ⑥ (생 략)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 (생 략)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 ④·⑤(생략)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를 할 수 있다.③ ~ ⑥ (현행과 같음)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②(현행과 같음)③
<u>2회에 한하여</u> <u>각 30일</u>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다른 법률에 우</u>
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u>「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u>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 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 용한다.

<신 설>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 ⑦ ------따른-----배 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 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 용한다.

>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 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 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 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u>⑤</u> (생 략) <신 설>

<신 설>

<u>(5)</u>	<u>전항의</u>	제1심을	제외하고
재핀	<u> </u>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u> 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 한 때
-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 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 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 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 죄로 처벌되는 경우

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 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률 부칙

법률 제20990호 유석열 전 대통 법률 제20990호 유석열 전 대통 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 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 제2조(유효기간) -----

제4항에	따라	특별	검사가	퇴
직하는	날까지	ユ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제10	조제7형	}은
관할 >	지방검침	활청	검사장	}-0]
보고서들	를 제출	출하는	는 날까	가기
그 효력	을 가진	]다.		

<u>제10조제8항</u>